

# 개정된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쇠고기종류별구분방법

(농림부고시 2001-63호 (2001.10.6))

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육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제정 시행중인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쇠고기종류별구분방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 번호를 통해 게재합니다.

농림부고시 제2001-25호(2001.9.18)와 농림부고시 2001-63호(2001.10.6)로 개정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 [별표13] 3의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·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

**제2조(식육의 종류)** 식육은 국내산고기와 수입고기로 구분되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·젓소고기·육우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·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고시에서 식육의 부위별·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판매 대상은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, 돼지의 식육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7조는 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·돼지고기도 적용한다.

### 제4조(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등)

①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. 다만,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 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눈피(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)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위별로 정한 지방 두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)**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

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등심, 채끝과 소분할 부위인 뒷등심살, 아랫등심살 꿏등심살, 살치살 및 채끝살은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(이하 "등급판정확인서"라 한다)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(안심, 목심, 앞다리, 우둔, 설도, 양지, 사태, 갈비)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1+등급, 1등급, 2등급, 3등급, 등외로 표시하거나, 1+등급은 특상등급(1+), 1등급은 특상등급(1), 2등급은 상등급,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, B등급, C등급, D등급, E등급으로 표시한다.

**제6조(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)**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국내산고기 및 수입고기(검역계류장도차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용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)로,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, 젓소고기, 육우고기(검역계류장도차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)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중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, 젓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젓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, 육우고기는 육

용종, 교잡종, 젓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젓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(별표8)의 나 규정에 의한 소도체 검사시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한 색깔 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쇠고기 종류에 의한다.

**제7조(식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)**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별표4에 의거 식육의 부위·등급·용도 및 원산지(쇠고기의 종류와 수입 생우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생우의 수출국)와 판매가격(100g당 가격)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역된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. 이 경우 표시방법을 별표4의 표시항목이 하나의 표시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판매표시판의 규격은 정해진 규격이상 크게 하거나 모양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"부위명"란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소분할 부위명을 표시한다. 다만,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③ "등급"란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명을 표시한다. 다만,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.

④ "원산지"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,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( )내에는 한우고기, 젓소고기,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( )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. 다만, 수입생우에서 도축·생산된 고기의 경우 ( )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
⑤ 식육판매업소가 포장육을 직접 제조·가공판매하거나 또는 육가공장 등에서 제조·가공된 포장육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4】

### 식육의 판매 표시판

#### 1. 쇠고기

부 위 명	
등 급	( )
용 도	
100g당 가격	
원 산 지	( )

1. 판의 폭은 2cm 이상, 길이는 15cm 내외로 한다.

2. 등급란의 ( )내에는 등급(1+등급, 1등급, 2등급, 3등급, 등외)표시불 한다.

예시 : 1+등급( ), 1등급( ), 2등급( ), 3등급( ),  
특상등급(1+등급), 특상등급(1등급),  
상등급(2등급), 중등급(3등급)

3.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기재하고, ( )내에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한우고기, 육우고기, 젓소고기로 표시하고, 수입산인 경우는 수출국을 표시한다. 다만,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( )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.

예시  
- 국내산 : 국내산(한우고기), 국내산(육우고기:호주),  
국내산(육우고기) 국내산(젓소고기)  
- 수입산 : 수입산(미국), 수입산(호주)

#### 2. 돼지고기

부 위 명	
등 급	
용 도	
100g당 가격	
원 산 지	( )

1. 등급별 구분은 업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2. 판의 폭은 2cm 이상, 길이는 15cm 내외로 한다.